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9(수)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55호
- 나. 제 출 자 : 정재동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금천구민이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환급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천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금천구민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 나. 사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위탁관리에 관한 준용 조례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안 제1조,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관내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금천구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용료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나. 주요 내용

- 1) 금천구민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 시설 사용 신청에 있어 금천구민이 우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2) 사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문화체육교실 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3) 위탁관리에 관한 준용 조례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4)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안 제1조, 제2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가 구민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구정 만족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02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